

< 1. 감면대상·세율 등 명확화 >

- 생애최초 감면(§36-3)에서 인용하던 배우자·주택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, 산출세액의 정의를 추가하여 정합성 제고(유상 외 무상거래 및 신축 등 세율이 적용)

< 출산·양육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 비교표 >

구분	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(§36의3)	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(§36의5)
목적	내집 마련 지원 및 주택 시장 활성화	출산 장려 및 안정적 양육 환경 지원
감면대상	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	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
감면한도	200만원	500만원

- 감면대상 주택에 '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'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여, 감면신설 당시의 입법취지 명확화

< 2. 사후관리 합리화 >

- 사후관리 요건을 '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'으로 완화하여 세정운영 합리화

※ 감면 및 추징요건에서 '상시 거주'를 삭제하였으므로, 내국인·외국인 부부가 자녀 출산시 출산·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6)
-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(부칙 §6)

* 예) ①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매각
: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

②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직장이전으로 전출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없이 2027년 2월 매각 : 개정규정 적용(추징제외)